

2019년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5. 8.(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 심의위원 : 손승우(분과위원장), 강상욱, 백대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60건(안건번호 제2019-30574호~30673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제2019-30574호~30583호는 음원 TOP100 건을 하나의 게시물로 웹하드에 복제 전송한 경우이며, 제2019-30584호~30590호는 2019년 4월에 개봉하거나 극장에서 무단 녹화하여 복제 전송하고 있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BTS의 최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160건의 게시물은 단순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로 의결합니다.

- B 위원 : 본건 심의안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안건 제2019-30584호~30590호의 경우 최근에 개봉한 영화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건번호 제2019-30574~30673호(160건의 게시물)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40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 심의안건인 복제물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음원 및 영상물로 저작물에 해당
해당 복제물들을 복제 및 전송한 자들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들이라 보이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시정조치가 요구됨
이번 심의안건들은 하나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음원 100개를 압축파일 형태로 웹하드에 게시하거나 상영관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녹화하여 웹하드에 복제 및 전송하고 있음

2019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5. 14.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